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의 판단 방법 및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2021. 9. 17.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발표자 소개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금융투자교육원 강사
- 한국예탁결제원
- 국세청

※ 주 업무분야 : 증권, 금융, 핀테크

sjcha@chakwon.com

목차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판단 방법

나.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 금융소비자 : ① 금융상품에 관한 ②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④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의 구분 >

구분	내용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국가, 한국은행, 모든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

CHA & KWON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무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구분 >

구분	내용	
그으사프지거미메어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금융상품판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대리·중개업	금팡성품에 찬만 계약의 세설을 내다야기나 궁개야는 것을 경엽으로 야는 것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급평경품사군립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불특정다수인 상대 제외)	

^{*} 투자중개업의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함에도 직접판매업자에 헤당

※ 법률용어는 경우에 따라 일상용어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개념과 상당한 차이

CHA & KWON

車·權 法律事務所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물적 적용범위) 금융상품, 금융상품판매 등 서비스
 - ㅇ 금융상품 :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투자일임계약 등

< 금융상품의 구분 >

구분	내용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투자성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금융상품판매 등 서비스 : 판매행위에 대한 직접규정은 없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념정의를 통하여 해석 가능, 자문의 경우 정의 존재
- ※ 법률용어는 경우에 따라 일상용어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개념과 상당한 차이

CHA & KWON

-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등록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규정
 - 금융기관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업권법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을 마치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
 -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등록의무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업의 규모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등록의무 면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 시 등록의무 면제 곤란
- ※ 최근 주로 이슈화 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 중개·대리업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록 관련 유의해야 할 기업 유형) 플랫폼서비스기업, B2C사업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해당 여부가 이슈화
 - * 그러나 플랫폼서비스기업외의 기업이나 B2B기업이라 할지라도 우선 금융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점검 필요
-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판단 방법)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o 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 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14도14924 등)

- □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면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이 비대면환경을 전제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ㅇ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 : 광고
 -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예: 배너광고)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판매업자에 연결 : 광고(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
 - ㅇ 신용카드 회원 전체에 전자메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안내 : 광고
 - o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개



- □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면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이 비대면환경을 전제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ㅇ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 : 중개
 - o 광고에 더하여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 : 중개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특정 금융상품 추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 : 중개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문에 응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 : 자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제반사정을 종합하므로 여러 증감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요인 >

항목	중가	감소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 입점 등에 플랫폼운영자의 영향력	허락된 업체들만 접근 가능	모든 이들이 접근 가능
계약의 체결 방식이 플랫폼내에서 체결되는지 여부	플랫폼을 통하여 체결	별도로 금융회사에 접속하여 체결
정보제공이 특정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 푸시알림의 경우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특정인 또는 그룹에 맞추어질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나 자문에 해당할 여지 존재	맞춤형 정보 제공	일률적 정보 제공
상품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열거 시 기준* * 가령 회사명, 자본금 또는 매출순 등 단순한 형식적 기준 v 그 외의 기준	임의적	형식적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판매를 목적	정보제공 자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제반사정을 종합하므로 여러 증감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요인 >

항목	증가	감소
판매실적과 수수료의 관계	판매실적에 연동	미연동 또는 수수료 미지급
상품공급규모 결정권한	권한 보유	권한 미보유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거래상대방	핀테크업체로 인식	금융회사로 인식
실제 상품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인식 가능성	인식가능성 낮음	인식가능성 높음
상품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 A증권 OO펀드	낮음	높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제반사정을 종합하므로 여러 증감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요인 >

항목	중가	감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핀테크업체의 관여도* * 정보의 제공, 판매를 위한 전자인증, 송금, 계약내역 정보열람 등	관여도 높음	관여도 낮음
상품구조의 단순성·차별성	단순	복잡
상품의 판매망의존도	높음	낮음
"ㅇㅇㅇ을 위한 ㅇㅇ상품 Top 10", "인기 ㅇㅇㅇ 상품", "ㅇㅇㅇ들에 게 알맞는 ㅇㅇ상품"등의 표현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플랫폼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일정한 상품을 추천 또는 플랫폼이용자에 대한 노출도 향상	추천 · 향상	그 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제반사정을 종합하므로 여러 증감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해당가능성 증감 요인 >

항목	중가	감소
핀테크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금융상품 가입 시 혜택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상품 추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미존재	존재
금융상품 상담기능의 제공	제공	미제공
정보제공을 받는 집단의 구체성	구체적	추상적



- □ (금융상품의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미해당된다고 하여도 자신의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제 적용 가능
- 금소법(§22①)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 광고할 수 있는 자를 법령에 열거(예: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등)



나.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 확인)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기간, ② 시행 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③ 2021. 09. 현재까지 보도자료 20회 이상(금융위+금감원) 다수의 현장접촉 등을 고려 시 "소 규모 회사여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곤란
 - 입법기간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1년으로 10년이상의 입법과정을 거치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와 같이 입법 가능
 - 유예기간 : 기존에 규제받지 않았던 영역*에서 해당 영업행위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 여부 이슈발생을 고려, 법 시행 후 6개월을 계도기간을 거치는 한편, 중개의 판단기준 안내
 - * 자동차 딜러의 차량가격 견적서 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은행 알선 등
 - ㅇ 보도자료 및 다수의 현장접촉 등 : 보도자료 배포만으로 약 1.5주에 1회
- ※ 경쟁기업 또는 이용자들의 민원접수 시 감독기관으로서는 고발, 과징금 등 조치 불가피*
 - * 또한 투자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이 법령이 요구하는 라이센스를 취득 및 위법사실 없음을 진술보장 할 것을 요구하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처벌 이슈도 존재

나.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 □ (확인 후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1) 업무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등록만 하여도 되는지, 각 산업 업권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 보험상품판매·대리점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므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할 필요
 - 대출모집인의 경우 온라인대출모집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그 외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각 협회를 통하여 등록을 할 필요
 - ㅇ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을 할 필요
- □ (확인 후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2) 그 외 업무 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이 필요하나 기업 여건상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 이용 불가피

CHA & KWON

감사합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